Yulchon Legal Update

2026.0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트래블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강화된 고객확인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Ⅰ. 고객확인제도(CDD) 정비

1.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개정안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신원 확인에 더하여 정부 발행 문서 등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의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ⅰ)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및 (ⅱ)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로 규정하여, 위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문언상으로는 금융회사등이 고객위험평가 결과와 별개로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회사등이 시행령 시행일에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Related Areas

금융규제

Contact

이광진 변호사
02-528-6456
kwangjinlee@yulchon.com

김시목 변호사
02-528-5764
smkim@yulchon.com

윤필상 변호사
02-528-6441
psyoon@yulchon.com

장재완 변호사
02-528-6172
jwjang@yulcon.com

이태호 외국변호사
02-528-5476
thlee@yulchon.com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
02-528-6467
hojaelee@yulchon.com

고객에 대하여도 일제히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언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어 향후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객확인이행시기 명확화(규정안 제23조의2)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한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고객확인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이하 "**STR**")를 이행하면 우선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뒤 강화된 고객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중단되었던 금융거래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실무적으로 STR과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계시키는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의심거래보고 관련 정보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해당 규정안에 따를 경우 재이행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이 된 고객은 본인의 금융거래가 STR 대상이 되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등 간접적으로 의심거래보고 또는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사실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어, 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등의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STR 후 강화된 고객확인 전까지 고객의 금융거래등을 정지시켜두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회사등이 면책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도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논의하면서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Ⅱ.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 및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

1.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원용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나 경영전략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주요주주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개정안에서는 대주주와 관련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규정하였고, 이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제출서류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범죄전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임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재무제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Ⅲ.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12, 별표1)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된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임원**, 대주주***를 구분하여 규정

* 부채비율 100분의 200 이상,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3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5년), 행정처분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것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부채비율, 건전한 신용질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을 대주주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

②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물적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테러자금금지법을 추가하고, 조직·인력, 물적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의 기준을 규정*

* (인력)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
(설비) 전산설비·통신수단, 충분한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③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도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

Ⅳ.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 정비

1.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현재는 국내 사업자 간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송수신인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가 적용되었으나, 100만 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60%에 달해 규제 회피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치나 수량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송신인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준금액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성명, 고객의 가상자산주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며,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개인 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시행령안 제28조의2 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비수탁형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의심거래로 간주하여 STR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되거나 유지·관리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주소

거래상대방	필요 조치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원 확인, 자금세탁 위험 평가 ② FATF 권고 이행 국가 소재,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인허가 의무 이행, 자금세탁 위험도 낮은 경우 거래 허용(단, 송·수인 정보 제공 필요) ③ FATF 고위험 국가 소재, 인허가 의무 불이행, 자금세탁 위험도 높은 경우 가상자산거래 제한 ④ 위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거래 허용 ⑤ 거래관계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 위험 평가
개인 지갑	①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거래 허용(단, 자금세탁 위험 높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
공통	①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의심거래로 간주**하여 STR 필요 ②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련된 거래 모니터링 강화

Ⅵ. 퇴직자 제재 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체화(시행령안 제15조 제4항)

특금법 개정으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시행일: 2026. 8. 20.), 개정안에서는 위 퇴직 임직원 제재조치 통보 권한 중 일부(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Ⅶ. 시사점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단계부터 운영, 그리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트래블룰) 및 해외·개인지갑 거래에 관한 조항(시행령 제10조의10, 제10조의20 일부)은 시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

년 1월 1일 또는 2027년 2월 1일 등 시차를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경우에는 변경된 규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STR 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금융회사 등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개정된 내용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으므로, 개정안 동향에 유의하여 모니터링하며 실무 프로세스 변경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6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